

## 후쿠타로 렌터카 대여 약관

### 제1장 총칙

(약관의 적용)

제1조 당사는 이 약관 및 제40조에 근거한 이 약관의 세칙(이하 통틀어 '약관 등'이라 합니다)

이하 "약관 등"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렌터카(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대여합니다.

합니다.)을 차용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에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차용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약관 등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이 약관을 우선합니다.

### 제2장 예약

(예약의 신청)

제2조 차용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차종 클래스, 계약개시일시, 차량 수령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여부를 미리 약관에 동의하고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여한다,

기타 차입 조건(이하 "차입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동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대여를 하는 경우(동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代車)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의 변경)

제3조 차용인은 전조 제1항의 차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의 취소 등)

제4조 차용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인이 차용인의 사정으로 예약한 차량의 임차 개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와 렌터카 대여 계약 (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 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차용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 예약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한 예약신청금과 상쇄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을 반환 또는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차량의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대체 렌터카)

제5조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용인이 전1항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경우,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며,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을 경우,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량 클래스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차용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4조 제4항에 따른 예약 취소로 처리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4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제4조 제5항에 따른 예약 취소로 처리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 (면책)

제6조 당사와 차용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 (예약 업무의 대행)

제7조 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에서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체에 전항의 신청을 한 차용인은 그 대행업체에 한하여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장 대여

#### (대여계약의 체결)

제8조 차용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으로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지(주1)에 따라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 체결 시 차수인에게 차용인(이하 '차용인'이라 한다)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게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자신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차용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1) 감독관청의 기본통지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고시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自旅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4호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기간 중 차용인 및 운전자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여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이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킨 경우.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련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인 조직에 소속된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경우.

(3) 과거의 대여에서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을 경우.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한다.)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을 위반하여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나 언사를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별도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전 2항의 경우에 차용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의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대여 계약의 성립 등)

제10조 대여 계약은 차용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차용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시작 날짜와 시간에, 같은 항에서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 요금)

제11조 대여 요금이란, 아래 요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기본 요금

특수 장비 요금

편도 요금

연료비 또는 충전비

차량 배달 및 회수 요금

기타 요금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서,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 운수관리부 효고 지상운송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지상운송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합니다.)에 신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제2조에 따른 예약 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점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여 요금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세칙에서 정합니다.

(대여 조건의 변경)

제12조 차용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 조건 변경이 대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검 및 정비 확인)

제13조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 [정기 점검 정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대리 대여를 포함하여,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2 [일상 점검 정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제14조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 지방 교통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차용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 포함)하여야 합니다.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4장 사용

(관리 책임 등)

제15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 (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유료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 등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당시 차주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당사가 차주의 개인정보를 그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상점검 정비)

제16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 전에

도로교통법 제47조의2 [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금지행위)

제17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시험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견인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 훼손하는 행위.

(10)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주차시 조치 등)

제18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주차를 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함과 동시에 렌터카의 임차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필서명서'라 합니다.)에 자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진신고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차량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는 한편,公安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및 자진신고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차용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합니다.)를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주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수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차량방치, 주차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수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전항에 규정된 청구금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차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차수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하라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서에 서명하라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5항에 규정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에 총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위반 위약금에 총당하기 위하여 해당 차주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8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차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국렌터카협회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9 차용인이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 환급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 받은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위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주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회사가 주차위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위반금 납부 등으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청구금액이 전액 납부된 경우, 당사는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GPS 기능)

제19조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측위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재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 (2)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 (3)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 2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

제20조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차수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용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3)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2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및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제5장 반환

### (반환 책임)

제21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차입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납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차용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반납 시 확인 등)

제22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에 차용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

렌터카 내에 차용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용 기간 변경 시 대여 요금)

제23조 차용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차수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차수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경된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환 장소 등)

제24조 차용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환장소 변경에 따른 반환

반환 장소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로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조치)

제25조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차주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차용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불반환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보고를 하고, 전국렌터카협회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차용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인 또는  
운전기사에게 렌터카의 소재를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및 GPS 기능 작동  
등조사 및 GPS 기능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은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 (고장 발견 시 조치)

제26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조치)

제27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의 수리를 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사고 등 발생 시 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드라이브 레코더가 장착된 차량에 대하여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도난 발생 시 조치)

제28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한다.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한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청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제29조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용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결함, 결함 기타 렌터카가 대여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용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차용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차용인, 운전자 및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에서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은 본 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본 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7장 배상 및 보상

#### (배상 및 영업보상)

제30조 차용인은 임차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렌터카(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차용인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차용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염, 약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한 렌터카(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험 및 보상)

제31조 차용인이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또는 손해배상책임공제계약 또는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배상

1명당 무제한

(2)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

(3) 차량 보상

1사고당 200만엔~350만엔(차종에 따라 상이) 면책금 5만엔

(4) 대인배상

1명당 3,000만 엔

2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 150호) 제2조에 따라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로 인해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경우를 제외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5 제1항에 규정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책임공제의 공제부금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 제8장 임대차계약의 해지

### (대여계약의 해지)

제32조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통지, 독촉을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에서 해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용인은 전항의 해지에 해당할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지불해야 합니다.

### (동의 해지)

제33조 차용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규정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2 차용인은 전항의 해지를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제9장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34조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 작성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 (2)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 광고물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 (3)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차수인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차수인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취득합니다.

### (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제35조 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에 대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본 협회에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하는 각 지역 렌터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당사에게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등록되어 전항의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됩니다.

## 제10장 기타규칙

### (대리대여)

제36조 당사는 신청자의 희망대로 차종, 차명 또는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한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당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렌터카 사업으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これを「代理貸渡し」라고 합니다.)

(1)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사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사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증은 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양식의 것이어야 한다.

(3) 대여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이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첨부되어 있을 것.)에 의해 첨부된 것일 것.

2 대리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약관을 적용할 업체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리대여를 하는 경우 기본통지에 규정된 '대여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의 대여증 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증에 따릅니다.

4 대리대여를 한 경우, 해당 대리대여를 한 차량에 대해 고장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는 자사 보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사업자가 실시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것 외에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상쇄)

제37조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차수인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제38조 차용인은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

제39조 차용인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칙)

제40조 회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중요사항의 정보제공)

제41조 회사는 차입자에게 이 약관 등 중 차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책임의 내용,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 회사의

영업배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 및 차주가 취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시 조치, 불법주차시 조치 및 반환지연시 조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어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약관 등의 게시 등)

제42조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차용인에게 표시합니다.

① 당사의 영업점포에 모두가 보기 쉽도록 게시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② 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도록 게재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 의 제시

또한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을 통해 약관 등의 개요를 차용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 등의 변경)

제43조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과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공지합니다.

(합의 관할 법원)

제44조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사,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후쿠타로 렌터카





